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61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 : 남인순 · 신정훈 · 정성호

이기헌 · 황정아 · 용혜인

김영배 · 김원이 · 진선미

박주민 · 서영석 · 백혜련

문진석 • 이병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돌봄 공동체인 '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 (협동돌봄센터)'이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음. 협동돌봄센터는 비영리조합으로 결성되며, 돌봄의 수요자인 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함양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하지만 현재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협동돌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돌봄 종사 자들 또한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이에 협동돌봄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돌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4조의3에 따른 협동돌봄센터가 보유한 정보 제28조의2제3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44조의3에 따른 협동돌봄센터의 대표자

제29조의3제1항제1호 중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4조의3에 따른 협동돌봄센터"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협동돌봄센터) ①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돌봄종사자(협동돌봄센터에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 공하는 보호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는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협동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동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

- 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협동돌봄센터는 제1항에 따른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협동돌봄센터의 설치기준, 운영, 돌봄종사자의 자격 및 인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생 략)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	②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	
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u>.</u>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의2. 제44조의3에 따른 협동돌</u>
	봄센터가 보유한 정보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② (생 략)	및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 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야 한다.

1. ~ 4의2. (생 략) <신 설>

5. ~ 7. (생략)

④·⑤ (생 략)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 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 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u>.</u>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44조의3에 따른 협동돌
봄센터의 대표자
5. ~ 7.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①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 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 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 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 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 .	26	(섀	랴)
	\sim	/n	(/ W	-

1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4조
의3에 따른 협동돌봄센터
9 ∼ 96 (혀해과 간은)

② ~ ⑦ (생 략) <신 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4조의3(협동돌봄센터) ① 보호
자 또는 보호자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돌봄종사자(협
동돌봄센터에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보호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는 조
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
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
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협동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협동돌봄센터를 설치·운영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 동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협동돌봄센터는 제1항에 따 른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동돌봄센터의 설 치기준, 운영, 돌봄종사자의 자 격 및 인가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